

교육과정혁신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15.04.01.
 개정 2019.04.29.
 개정 2019.09.30.
 개정 2024.10.07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과정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원활한 관리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센터의 제반 운영에 적용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전담 행정직원을 둔다.

② 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의 자문과 심의는 “교육과정혁신위원회”를 통해 실시한다.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 이상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교육과정혁신센터를 총괄하며, 센터를 대표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업무) 센터는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, 비전과 사명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업무
2.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양 및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
4. 교육과정 평가전반의 관리 및 운영 업무
5. 교육과정 질관리 지원 업무

제6조(위원회) ① 대학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대학, 스쿨 단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위원회 구분은 각호와 같다.

교육과정 위원회			
1	대학	교육과정혁신위원회	- 교육과정 총괄 부서장, 교육과정혁신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스쿨별 1인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한다. - 위원장은 교육과정혁신센터장으로 하며, 교육과정 편성, 운영,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경과조치 등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과정 정책 수립, 편성 및 개발(개편), 인증, 운영 평가,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. -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- 위원회 사무는 교육과정혁신센터에서 담당한다.
2	스쿨	스쿨교육과정개발운영위원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쿨 원장, 스쿨 소속교수, 산업체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 - 위원장은 스쿨 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한다. - 스쿨 교육과정의 정책 수립, 개발 및 개편, 학점 및 강의 시간(수), 기타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 및 심의한다. 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- 위원회의 사무는 각 스쿨 행정실에서 담당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